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제700호

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제교류위원회 규정

서울과학기술대학교(국제교류처), 02-970-9212 제정 2022. 8. 19.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제교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기능)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제교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국제화 추진 기본정책 조정 및 국제화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 - 2.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- 3. 국제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
 - 4. 국제화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
 - 5. 그 밖에 국제화 관련 업무
- 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국제교류처장, 교무처장, 학생처장, 기획처장, 생활 관장의 당연직 위원 5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 은 국제교류처장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은 해당 분야에 경력 또는 경험이 있는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②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.

- 제4조(회의)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(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심의 포함)으로 심의・의결할 수 있다.
- 제5조(자문위원 위촉) ① 국제교류 및 외국어 유학생 유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교내외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.
 - ② 자문위원은 국제교류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총장 명의의 위촉장을 자문위원에게 발급할 수 있다.
 - ③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, 수당,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6조(기타)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(제700호, 2022. 8. 19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